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2-11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동작구 체육시설의 운영과정 중 미비점이던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, 기존의 감액사유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구민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여 구민이 동작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립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체육시설 감액 대상에 일반 구민을 포함하여 시설 이용료의 10% 감액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)
-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(안 제1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
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emrq0107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1조 중 “제136조 및 제144조”를 “제153조 및 제16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동작구청장”으로, “체육
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체육시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
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할 수 없다”를
“해서는 안 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구 홈페이지”를 “서울특별시
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홈페이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- 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”를 “구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설치한”을 “설치하였을”로, “완료한”을 “완료하였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국가·서울특별시”를 “국가, 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

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전단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전단 중 “제1항에서 제6항까지”를 “제2항에서 제7항까지”로, “감면”을 “감액”으로 한다.

⑦ 구민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%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때”를 각각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해함이 판명될 때”를 “해친다고 판명될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체육시설”이란 서울특별시 <u>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이 설치·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</u>과 이에 따르는 설비, 비품 등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3조(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<u>구청장은</u>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·관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사용허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153조 및 제16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동작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<u>체육시설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<u>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</p>
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,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[항 신설 2021.11.4.]

<신 설>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.

1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행사

2. (생략)

제6조(사용시간 등) ① (생략)

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

----- 해서
안 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홈페이지 -----

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-----

1. -----
구의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.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·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
2. (생략)
- 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. , ,

⑧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삭제
2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

----- 설치하였을 -----
----- 완료하였을 -----
-.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국가, 서울특별시 -----
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구민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%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.

⑧ ----- 제7항-----

-----.

⑨ 제2항에서 제7항까지-----

----- 감액-----
-----.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-----

-----.

2. ----- 경우

3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

4.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
니한 때

5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
판명될 때 [호 신설 2021.11.4.]

② 삭 제

③ (생 략)

3. ----- 경우

4. -----
--- 경우

5. ----- 해친
다고 판명될 경우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